

EC내의 지역간 경제격차에 관한 연구*

심 상 필 · 황 두 현

본 논문의 목적은 각기 다른 경제규모와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여러나라가 하나의 통합경제체를 형성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국가간의 격차, 국가내에서의 지역간의 격차 그리고 통합체내에서의 지역과 지역간의 격차를 어떻게 극복·조정해 나갈것인가에 관한 유럽공동체 수준의 목표와 수단과 진행상황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우선 거시지표를 이용한 국가간·지역간의 격차를 포착한 다음, 지역정책의 목표를 통하여 지역정책을 정의하였다. 이어서 각지역 정책의 주체들을 명확히한 다음, 지역격차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구조기금(fonds structural)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기금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끝으로 유럽공동체 차원의 지역 격차 조정정책의 발전 과정을 서술하였고, 앞으로 추진될 여러가지 계획안을 열거하였다.

유럽통합은 비록 유럽이 문화적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민족국가로서의 유럽 각국이 국경을 과감히 허물고 “하나의 유럽”을 건설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관심을 끄는 모험이다. 그리고 이 모험은 현대가 “세계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성패의 여부는 또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I. 개 판

지역은 우리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자율적인 정치경제의 단위로서 기능해 오지 못하였다. 이러한 지역분권의 결여는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적인 민주화나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인 동시에 정치적인 비민주성과 불균형적인 경제구조의 결과로서 자리잡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공동체의 지역문제를 조명해 보는 것은 유럽 내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분권화와 국가연합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앞으로의 지역적 균형 발전을 위한 모델 케이스를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데 목적이 있다.

유럽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12개의 국민국가들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볼 때, 지역적인 자치의 수준은 역사적으로 강한 지역 분권의 전통이 있는 연방국가인 독일에서부터 강한 중앙집권 국가인 그리아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유럽의 12개 국 중에서 연방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독일과 벨기에이다. 그밖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단일 국가 헌법하에서 상당히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국가로 남아 있다. 나머지 포르투갈, 그리아스, 아일랜드,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에는 지방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민족국가 하부의 地域의 自律性은

* 이 글은 교육부의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심리·문화적인 요소와 정치·경제적인 요소로 나누어서 볼 수 있으며, 이 양자의 自律性의 정도가 합치될 때, 가장 큰 행정상의 효율과 주민의 민주주의적 욕구의 충족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심리·문화적인 지역성의 정도는 정치·경제상의 분권화의 정도를 반영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정치·경제상의 분권화의 적정한 수준을 규정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유럽공동체 내에서 심리·문화적으로 地域性이 가장 강한 곳은 독일과 스페인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심리·문화적인 지역성이 정치·경제적인 면에서의 자치 구조와 합치되어 균형 있는 지방 분권을 이루고 있으나, 스페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역성을 뒷받침해 줄 만한 실질적인 정치·경제상의 지방분권이 자리잡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 결과, 스페인의 각 지역의 주민들의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Commission, DG des politiques régionales, 1992)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역성에 걸맞는 정치·경제적인 分權化(décentralisation)를 행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 중에서 정치적인 분권화는 1978년 憲法改正을 통해 형식적으로는 半聯邦制(semi-federalism)로 그 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經濟的인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中央集權의 성격이 강하다.

그 要因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1978년까지 계속되어 온 프랑코 체제하의 정치적 中央集權의 영향이다. 다시 말하면, 스페인은 國民國家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지역성의 차원은 억압되었고 국민경제의 통일적인 형성과 발전에 중점을 둔 근대화의 과정에서 정치·경제적인 중앙집권 국가가 된 것이다. 둘째, 스페인의 농업 생산에 있어서 前近代의 토지 소유 및 생산의 양식이 1960년대까지도 지배적이어서, 農業生產力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러한 농업에 토대를 둔 지역적인 產業資本이 형성되지 않은 관계로 지역이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을 가질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經濟史의 주제는 본 論文의 주된 관심사항이 아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그 연방국가적 정치·경제 구조가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의 연합적 정치체제의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대조되는 지역화의 모델과 비교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외의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사실상 地域性이 크지 않고, 중앙집권적인 체제하에서도 국민적 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의 規模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오래 전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정치적으로 지방분권화가 잘 되어 있는 나라로서, 독일과 유사하다. 이탈리아는 남유럽의 공통적인 권위주의적인 정권을 경험한 국가로서, 오랫 동안 지역성이 지방분권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고, 지역적인 격차가 아주 심한 상태에 있다. 프랑스는 그 地理的인 위치만큼이나 중간적인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1983년 사회당 정권하에서 지방분권으로의 급속한 이행을 경험했으며, 그 안의 각 지역들은 점점 더 그 지역성을 강화하고, 보다 넓은 권한의 분산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 공동체의 地域政策은 유럽공동체 내의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복지 수준과 의사

결정과정에서의 참여의 수준을 규일화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유럽 전체에서 하나의 동질적인 社會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한 목표의 설정은 여러 층의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가 합치된 결과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유럽공동체 전체의 이해, 둘째, 저발전 지역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국민국가들의 이해,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역에 생존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관계이다. 단일 법령의 목표로서 명시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일치는 유럽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며, 유럽 사회라는 명제는 유럽 전 지역의 전 주민의 情緒的 共感帶, 사회적인 삶의 틀의 접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회의 형성을 위한 지역 정책은 그 대상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상호 작용 속에서 진행될 때 의미가 있음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공동체의 지역정책 개념이 만들어진 이래, 그 지역정책이 어떠한 구조와 장치를 가지고 각 지역의 정치·경제적 자율성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지역경제개황

1. 인구

인구규모는 각국이 갖는 소비시장의 크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구성비정 도를 나타내는 주요한 거시경제지표이다. EC의 인구규모는 1960년의 2억7천9백만명에서 1970년에는 3억2백만명으로, 그리고 1980년에는 3억천7백만명으로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3억2천8백만명에 이르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1990년 현재 독일이 6천2백만명으로 가장 많고, 영국(5천7백만), 이태리(5천8백만), 프랑스(5천6백만) 등이 5천만명을 넘는 수준으로 이들 4개국이 인구면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스페인이 3천9백만으로 비교적 큰 시장을 이루고 있으나, 다른 7개국은 1천만도 안되는 소규모의 국가들이다.

따라서 인구 면에서 볼 경우, EC회원국들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90년도의 EC의 인구규모 3억2천8백만명은 미국의 2억5천1백만명과 일본의 1억2천4백만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미국과 일본과 함께 주요 선진국시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2000년도에는 독일이 8천만명, 그리고 프랑스, 영국, 이태리가 6천만명대의 인구를 가지게 되어, 인구분포면에서 90년대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EC전체의 인구는 2000년에는 3억5천6백만명 그리고 2025년에는 3억5천7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2000년 초기에는 인구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전된다. 미국과 일본을 합한 인구규모(2000년 3억9천8백만명, 2025년 4억3천5백만명)와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1〉 인구추이 및 예측

단위: 1000명

	1960	1970	1980	1990	2000	2025
벨기에	9,153	6,651	9,847	9,931	10	10
덴마크	4,581	4,929	5,123	5,151	5	5
독일	55,433	60,651	61,566	63,340	80	78
그리스	8,327	8,793	9,642	10,076	10	10
스페인	30,583	33,876	37,386	39,233	40	40
프랑스	45,684	50,772	53,880	56,311	59	63
아일란드	2,834	2,950	3,401	3,528	4	4
이태리	50,198	53,661	56,416	57,682	58	55
룩셈부르크	314	339	364	374	4	4
네델란드	11,483	13,032	14,148	14,938	16	16
포르투갈	8,426	8,432	9,289	9,816	11	11
영국	52,372	55,632	56,330	57,373	59	61
EC 총계	279,338	302,718	317,392	327,753	356	357
(미국)	180,671	205,052	227,757	251,255	270	307
(일본)	94,118	104,674	116,800	123,650	128	128

1) 2000년 및 2025년의 예측치는 단위가 백만명이고, 자료출처는 *The Development Report 1992*.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pean Economy: A Economic Report 1990-1991*, Statistical Annex, Dec. 1990.

2. 국민소득

EC국가의 일인당 GNP는 1984년도의 경우, 덴마크 11,170달러, 독일 11,130달러, 프랑스 9,760달러, 네델란드 9,520달러, 벨기에 8,610달러, 영국 8,570달러, 이태리 6,420달러, 아일란드 4,970달러, 스페인 4,440달러, 그리스 3,410달러, 포르투갈 1,970달러의 순으로 되어있다. 이 가운데 세계은행이 분류하는 기준에서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2개국 만이 상위중간소득국(upper middle-income economies)에 속하고 나머지 10개국은 모두 고소득국(high income economies)에 속하고 있다.

한편 1990년도에는 1984년에 비해 소득이 두배로 증가하였다. 즉, 독일 22,320달러, 덴마크 22,080달러, 프랑스 19,490달러, 네델란드 17,320달러, 이태리 16,830달러, 영국 16,100달러, 벨기에 15,540달러, 스페인 11,020달러, 아일란드 9,550달러, 그리스 5,990달러, 포르투갈 4,900달러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각기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서 이태리와 영국의 급상승이 눈에 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2개국은 6000달러 미만의 상위중간소득국 속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9000달러 이상의 고소득국에 속하고 있어 1984년에 비해

변함이 없다.

이같이 볼 때, 80년대 후반에 들어 EC국들의 국민소득수준은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 소득분포면에서 볼 때는 스페인, 아일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남부에 위치한 국가들은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저위에 머무르고 있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특히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2개국은 싱가포르나 홍콩의 수준에도 못미치고 한국과 비슷한 국민소득수준을 시현하고 있다.

한편 EC회원국의 평균소득수준은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이를 시계별로 보면, 1980년도까지는 덴마크나 독일 등 주요 EC국의 소득수준이 일본을 앞질렀으나, 80년대 이후 일본에 모든 EC국들이 뒤지고 있다. 반면, 미국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1984년에는 EC국 중 가장 소득이 높은 덴마크나 독일의 소득수준은 미국의 72%수준이었으나, 1987년에는 83%수준으로 육박하였다. 그리고 1990년에는 오히려 상기 2개국의 일인당GNP는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

〈표 II-2〉 일인당 GNP

단위: US달러, %

	1984	1987	1990	년평균증가율	
				(1965-84)	(1965-90)
벨기에	8,610	11,480	15,540	3.0	2.6
덴마크	11,170	14,930	22,080	1.8	2.1
독 일	11,130	14,400	22,320	2.7	2.4
그리스	3,410	4,020	5,990	3.8	2.8
스페인	4,440	6,010	11,020	2.7	2.4
프랑스	9,760	12,790	19,490	3.0	2.4
아일란드	4,970	6,120	9,550	2.4	3.0
이태리	6,420	10,350	16,830	2.7	3.0
네덜란드	9,520	11,860	17,320	2.1	1.8
포르투갈	1,970	2,830	4,900	3.5	3.0
영 국	8,570	10,420	16,100	1.6	2.0
미 국	15,390	18,530	21,790	1.7	1.7
일 본	10,630	15,760	25,430	4.7	4.1

자료: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6, 1989, 1992.

3. 고용

EC내에서의 고용상태를 보면, 60년대에는 EC전체의 평균실업율이 2%선에 그치었다. 특히 베네룩스3국과 독일의 경우는 1%미만의 실업율을 보여 거의 완전고용상태를 유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그리스, 아일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이태리 등의 상대적인 저소득국들도 5%이하의 실업률을 보여 고용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 초 석유파동이후 EC제국의 고용상태는 악화되어, EC전체의 평균실업률이 4.2%로 상승하였다. 이 시기에는 독일과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들이 4%이상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일란드는 7.7%라는 높은 실업률을 보였고, 스페인과 이태리는 그 실업률이 6%수준 달하였다.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서서 EC의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전체적으로 9.6%라는 고율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고용사정이 양호하였던 독일이 6.1%의 실업률을 기록하였고 덴마크도 7.6%를 보였으며, 벨기에와 네델란드는 유례없는 무려 10%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상대적으로 저소득국인 아일란드는 80년대의 10년동안 평균 16.1%라는 높은 실업률 그리고 스페인은 평균 18.4%의 매우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나 낮은 나라 구별없이 모든 EC 국가들이 높은 실업률로 고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악화된 EC내의 고용사정은 90년도에 들어와서도 개선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그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실업률 지표가 보여주고 있다. EC전체 평균실업률이 1991년에도 상당히 높은 8.7%를 보였으나, 1992년에는 9.4%로 더욱 증가하였고, 나아가 1993년 3월에는 두 자리수인 10.3%까지 상승

〈표 II-3〉 실업률(%)

	1964-70	1971-80	1981-90	1991	1992.4.	1993.3.
벨기에	2.0	4.6	10.7	7.7	8.1	9.1
덴마크	1.0	3.7	7.6	8.8	9.5	10.0
독일	0.7	2.2	6.1	6.3	4.4	5.2
그리스	5.0	2.2	7.2	9.2	-	-
스페인	2.7	5.4	18.4	15.6	17.6	21.0
프랑스	2.0	4.1	9.2	8.7	10.0	10.5
아일란드	5.5	7.7	16.1	16.5	17.6	18.4
이태리	5.0	6.1	9.6	10.3	10.2	10.3
룩셈부르크	0.0	0.6	2.5	1.6	1.9	2.4
네델란드	1.2	4.4	10.2	7.2	6.8	7.8
포르투갈	2.5	5.1	7.0	4.9	4.9	-
영국	1.7	3.8	9.7	7.3	10.5	11.4
계	2.3	4.1	9.6	8.7	9.4	10.3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전계서.

1992. 4. 1993. 3.은 매일경제신문, 1993. 6. 9일자.

하였다. 스페인(21%)과 아일란드(18.4%)는 실업율이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태리 는 여전히 10%이상의 실업율을 계속하여 보이고 있다. 덴마크, 프랑스, 영국 등 상대적 고소득국들도 두 자리수의 실업율을 보여 고용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독일이나 룩셈부르크 그리고 포르투갈은 비교적 낮은 5%대의 실업율을 보이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EC전체로 볼 때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호전되지 못하고 계속하여 악화되고 있는 추이를 보여, 향후 국가간의 정책조정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용문제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 물가

60년대에는 한 자리수의 물가상승율(4.4%)을 보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EC내의 물 가 상황이, 석유파동으로 70년대와 80년도 초까지 두 자리수의 높은 물가상승(11.0%)을 보여 불안한 물가상황을 보였다. 그러나 80년도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여, EC 전체적으로 6%대의 물가 상승율을 보이고 있다.

소득이 낮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란드 등은 1970년대에 14-16%의 높은 물 가상승율을 보이었다. 그 가운데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80년도에 들어서도 물가상승율이

〈표 II-4〉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1961-70	1971-80	1981-90	1991
벨기에	3.4	7.1	4.4	4.4
덴마크	6.4	9.7	6.0	2.3
독일	3.7	5.3	2.9	4.4
그리스	3.1	13.7	18.4	17.7
스페인	6.4	15.2	9.3	6.8
프랑스	4.4	9.9	6.4	3.4
아일란드	5.5	13.8	7.2	3.3
이태리	4.5	14.8	10.3	6.7
룩셈부르크	4.0	6.5	4.4	3.8
네델란드	5.2	7.6	2.3	2.8
포르투갈	2.9	16.1	17.8	12.6
영국	4.2	14.0	6.4	6.8
계	4.4	11.0	6.8	5.5
(미국)	3.0	7.4	4.2	5.5
(일본)	5.4	7.6	1.4	2.1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전개서.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상승세가 18%대로 악화되었다. 반면에 스페인과 아일란드는 상승세가 누그러져 9% 및 7%대로 각기 하락하였다. 한편 이태리 및 영국도 70년대에는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14%대의 높은 물가상승율을 보였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서는 다소 안정을 보여 이태리는 10%로 영국은 6%대로 각기 줄어들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6%대 이하의 물가상승율을 보이며, EC 전체로도 5%대의 비교적 안정된 물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덴마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은 4%미만의 낮은 물가 상승을 보이고 있어 매우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두 자리수의 높은 물가상승율이 지속되어온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각기 17.7% 및 12.6%의 매우 높은 가격상승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의 물가상승율은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국가간의 거시정책적인 조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5. 무역

(1) 수출입증가추이

1960년대 EC의 평균 수출증가율은 7.9% 그리고 수입증가율은 8.8%로서 수출입 활동이 활발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국민소득수준이 낮은 그리스, 스페인,

〈표 II-5〉 수출입증가율(자국통화, 평균, %)

	1961-70		1971-80		1981-90		1991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벨기에	9.2	8.5	5.0	5.3	4.6	4.0	4.8	5.3
덴마크	6.4	7.9	4.3	1.7	4.6	3.0	3.9	1.7
독일	7.6	9.3	5.4	5.5	5.3	4.0	8.9	9.9
그리스	10.7	11.2	11.4	5.9	5.7	7.2	4.6	3.7
스페인	11.6	18.3	7.0	6.3	5.8	8.1	3.8	5.6
프랑스	8.7	10.2	7.4	5.7	3.9	4.0	4.1	4.4
아일란드	9.5	9.8	7.3	6.5	8.0	4.8	6.2	4.5
이태리	11.1	11.3	5.8	4.3	4.5	4.8	4.2	5.4
룩셈부르크	5.7	5.9	3.0	3.5	5.6	4.9	3.5	4.9
네덜란드	8.4	9.8	5.1	4.1	4.3	3.9	4.4	3.9
포르투갈	11.5	11.3	5.0	4.9	8.3	6.8	6.8	6.5
영국	4.8	4.1	4.3	3.5	3.4	5.6	1.7	0.5
계	7.9	8.8	5.6	4.8	4.6	4.8	5.0	5.1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전계서.

포르투갈 및 이태리의 수출증가율은 년 10%이상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수출입 증가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4%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수입면에서도 나타나 상대적인 저소득국의 수입신장율이 11%이상으로 높으며, 영국은 수출의 경우처럼 4%의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1970년도 이후로는 EC국들의 수출입 신장율은 5%대로 전반적으로 낮아졌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4%대로 더욱 약화되었다. 수출과 수입 양면에서 모든 국가들이 4-6%의 고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포르투갈이나 아일란드같은 국가들의 수출신장세가 9%를 육박하는 강세를 보인 것은 특기할 만하다.

(2) 지역별 수출입동향

EC국들의 무역거래는 테반이 역내국가와 이루어지고 있다. 총수출 가운데 EC지역내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도에는 63.1%에 이르고 있다. 이는 EC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이전인 1958년의 37.2%에 비하여 거의 배로 증가한 수준으로 지난 30여년간 EC내의 교역이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EC국들의 개도국시장 수출의존도도 1958년의 19.8%에서 1989년에는 9.4%로 줄어들어 EC제국들의 수출시장은 대부분이 OECD 국가들에 국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수입시장도 수출시장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58년에는 35.2%에 불과하였던 EC역내 수입비중이 1989년에는 59.5%로 증대하였고,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도 18.7%에서 8.8%로 상당히 위축되었다.

(표 II-6) EC전체의 지역별 수출입 비중(%)

년도	수출		수입	
	EC 내	EC 외 (내 개도국)	EC 내	EC 외(내 개도국)
1958	37.2	62.8 (19.8)	35.2	64.8 (18.7)
1989	63.1	36.9 (9.4)	59.5	40.5 (8.8)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전개서.

이같이 볼 때 EC국가들의 수출과 수입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내의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89년도의 역내교역규모를 국가별로 살펴보자. 먼저 수출 면에서 보면, 네델란드와 아일란드는 총수출의 80%이상을 EC국가들에 수출하고 있어 EC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역내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역내 수출의존도가 70%수준인 국가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포르투갈이며, 60%대의 역내수출을 보이고 있는 국가로는 그리스, 스페인, 및 프랑스이다. 그리고 덴마크, 독일, 이태리, 영국 등의 국가는 총수출의 50%정도를 역

내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표 II-7〉 국별 EC내 수출입 비중(1989년)

	수 출	수 입
80%이상	네델란드, 아일란드	-
70%-80%	벨기에,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아일란드,
60%-70%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프랑스, 네델란드, 포르투갈
50%-60%	덴마크, 독일, 이태리, 영국	덴마크, 독일, 이태리, 영국, 스페인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전계서.

다음으로 수입 면에서 보면, 아일란드만이 수입의 70%정도를 회원국으로부터 도입하여 가장 높은 역내수입의존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의 국가들은 50%내지 60% 정도를 역내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아일란드는 수출면에서는 80%이상을 그리고 수입면에서도 70%이상을 회원국에 의존하고 있어 무역의 역내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끝에 끝난다. 한편 EC통합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독일, 이태리, 영국 그리고 덴마크 등의 국가는 다른 회원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입의 역내의존도를 보여 주고 있음을 특기할 반하다 하겠다.

(3) 교역조건 추이

수출단가와 수입단가와의 비율로 나타나는 교역조건의 변화를 살펴보자. 먼저, EC국가 간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농산물산출국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의 교역조건(1980년=100)지수가 1991년 107.9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공산품위주의 산업구조를 갖는 독일의 교역조건지수는 110.3으로 나타나 양자 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1년도에 교역조건지수가 가장 낮은 룩셈부르크와 가장 높은 이태리는 각기 93.7과 117.0를 보이고 있는데 양자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0년을 전후하여 교역조건이 눈에 띠게 악화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와 이태리이고, 하향추세에 있는 국가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아일란드를 들 수 있다. 반면에 스페인과 영국의 교역조건은 다소나마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의 국가들은 그다지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II-8〉 교역조건(1980=100)

	1960	1970	1980	1981
벨기에	106.0	106.6	100.0	100.6
덴마크	112.1	120.7	100.0	101.3
독일	100.7	111.8	100.0	110.3
그리스	109.8	114.2	100.0	111.9
스페인	93.9	114.3	100.0	115.7
프랑스	125.5	127.6	100.0	107.9
아일란드	114.7	113.2	100.0	104.8
이태리	123.4	130.6	100.0	117.0
룩셈부르크	112.2	113.2	100.0	93.7
네델란드	101.9	107.3	100.0	103.5
포르투갈	116.8	112.3	100.0	106.2
영국	99.7	103.6	100.0	105.8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전계서.

III. 지역간 경제격차 추이

EC내에서의 회원국간의 경제격차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경제격차를 측정하는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경제성장이나 발전과정은 여러가지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매우 복잡한 일련의 과정이므로 이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국가간 또는 지역간의 경제력이나 성장력의 차이를 파악하기란 간단하지가 않다. 다른 지역이나 국가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대할 경우 특히 어려움이 뒤따른다. 만일 국가간의 경제격차가 줄어들어 하나의 공통된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이 EC전체로 볼 때 바람직하다면, 각 회원국의 경제지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국민총생산이나 일인당 국민소득의 절대적인 명목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 각국의 인구, 물가수준, 대외환율 등의 변동을 감안한 국민소득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국가간의 경제격차를 정확히 나타내는 것이 되고 또한 이러한 격차의 축소경향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매력평균으로 환산한 각국의 소득수준의 추이를 일인당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EC전체를 100으로 할 경우, 1960년에는 하위그룹에 속하는 그리스(38.7)나 포르투갈(38.8)의 소득수준은 상위그룹에 속하는 룩셈부르크(158.4)나 영국(128.7)의 1/4에도 못 미치었다. 그러나 하위그룹국가들의 소득이 신장하여 1970년에는, 그리스(51.6)나 포르투갈(48.9)의 소득수준은 룩셈부르크(141.5), 독일(113.3), 네델란드(115.9)의 1/3수준으로 상승하여 그 격차가 다소간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1980년에는 하위그룹의 소득수준이 상위그룹 소득수준의 1/2수준에까지 상승하기에 이르렀다 (그리스 58.2, 포

르투갈55.1; 룩셈부르크 119.3, 독일 113.8).

1991년 현재 독일이 112.5 그리고 룩셈부르크가 125.4를 보여 상위에 속하고,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이태리, 네델란드 그리고 영국이 100을 약간 상회하여 중간그룹에 속한다.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 아일란드, 포르투갈 등이 하위에 속하는데, 특히 하위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의 소득지수가 상위그룹국가들의半정도에 그치고 있어(그리스 52.8, 포르투갈 56.9, 아일란드 69.2, 스페인 77.1), EC회원국 간의 소득격차가 매우 심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인당 소득의 국가간 격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II-1〉지역별 일인당 GDP(구매력평가 환산지수, EC전체=100)

	1960	1970	1980	1990	1991
그리스	38.7	51.6	58.2	53.4	52.8
스페인	59.6	73.9	73.4	76.7	77.1
아일란드	60.8	59.6	64.1	68.8	69.2
포르투갈	38.8	48.9	55.1	56.2	56.9
벨기에	95.4	99.0	104.2	102.8	103.3
덴마크	118.4	115.3	108.0	105.1	104.2
독일	118.0	113.3	113.8	112.4	112.5
프랑스	105.9	110.5	111.8	108.5	108.9
이태리	86.6	95.5	102.6	104.0	104.4
룩셈부르크	158.4	141.5	119.3	124.2	125.4
네델란드	118.7	115.9	111.0	103.8	103.6
영국	128.7	108.5	101.1	105.4	104.0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전계서.

EC국가간의 소득격차가 줄어든 현상은 저소득국가인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1960년도 이후 국내총생산활동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60년대의 GDP성장을 보면, EC 평균이 4.8%인데 비하여 그리스는 7.6%, 스페인 7.3% 그리고 포르투갈은 6.4%라는 매우 높은 성장율을 각기 보였다. 1970년도에 들어와서도 상기의 국가들은 3.5%에서 4.7%의 신장세를 보여 EC평균 3.0%를 상회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도 스페인은 2.9%, 포르투갈은 2.7%, 아일란드는 3.3%로 EC 평균 2.3%를 능가하였다.

〈표 III-2〉 지역별 GDP 증가율(년평균, 자국화폐단위)

	1961-70	1971-80	1981-90	1991
그리스	7.6	4.7	1.5	1.0
스페인	7.3	3.5	2.9	2.5
포르투갈	6.4	4.7	2.7	3.2
아일란드	4.2	4.7	3.1	2.3
프랑스	5.5	3.2	2.1	2.5
벨기에	4.9	3.2	1.9	2.2
덴마크	4.5	2.2	1.7	0.9
독일	4.5	2.7	2.1	3.1
이태리	5.7	3.8	2.3	2.3
룩셈부르크	3.6	2.6	3.3	2.9
네덜란드	5.1	2.9	1.8	2.0
영국	2.9	1.9	2.6	0.7
평균	4.8	3.0	2.3	2.2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전개서.

IV. 지역문제

1. 지역문제의 정의

지역문제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國民國家 내에서, 각 지역의 정치적 自主性에 대한 요구가 사회경제적인 불균등을 기화로 하여 분출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공동체에 있어서의 지역문제도 이와 다를 수 없다. 그러나 공동체를 단일한 공간으로 간주했을 때의 지역문제는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각 국가 내에서 지역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사항들이 공동체라는 場에서도 역시 지역문제로 등장한다. 또한 국가 간의 사회경제적인 복지 수준의 차이가 통합 이전과는 달리 공동체 내에서는 지역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주권 국가도 그 규모가 작을 경우 공동체 내에서는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내의 지역문제는 통상적인 지역문제와 결정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 이는 지역문제가 정치적인 자주성의 요구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동체에 가입한 국가들은 이미 民主主義를 행한다는 진체 속에 회원국이 된 것이고, 실제로 지역의 요구에 따라 정치적인 분권화를 상당한 정도로 진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사회·경제적인 不均等과 從屬性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공동체 내의 모든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지역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각 국가 내에서의 지역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종속의 문제이다. 국가 간의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도 그 본질을 살펴 보면, 대비되는 국가들 내부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적인 구조의 차이점 문제로 환원되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각 국가 내의 지역간의 사회경제적 균형 문제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국가 내의 각 지역의 경제적 자립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 몇몇 대표적인 국가 내의 지역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체 유럽공동체의 범위에서의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의 전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상의 극히 제한된 수치들은 유럽공동체의 소위 남유럽 국가군에 속하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에 있어서의 경제력의 지역적 불균형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회원국들 가운데서 지역적 동질성이 강한 덴마아크는 지역적 불균형이 극히 미미하며, 영국과 서독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향부르크나 브레멘의 실업률은 바이에른에서의 실업률에 비하여 세배가 된다.

2. 국가별 경제력의 지역간 균형문제

스페인(Bennet, 1989) : 공공지출에서 각 수준의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

%	78년	86년
중앙정부	90.2	76.3
지역정부	0	12.0
지방정부	9.8	11.7

유럽지역발전 기금(FEDER)의 사용: 중앙정부:58% 지역정부:35% 지방정부:7%

회립(Yachir, 1989)

영토의 3%에 $\frac{1}{3}$ 의 인구와 $\frac{1}{2}$ 의 GDP가 집중됨

포르투갈(Yachir, 1989)

북쪽 세개의 연안지역에 $\frac{9}{10}$ 의 GDP와 $\frac{4}{5}$ 의 인구가 집중됨

이탈리아

제조업부문의 기업·취업자 지역분포(단위%)

	기 업 체		취 업 자	
	1971	1981	1971	1981
중·북부 이탈리아	73.79	79.69	86.86	85.33
남부·도서지방	26.21	20.31	13.14	14.61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WEIS,『ARC ポ-ト イタリア 産業』, 1985.4. 산업연구원,『이탈리아경제와 기업진출 환경』, 1989.

**독일연방
지방의 재정 자립도 35%**

	세입	세출
Bund	50%	45%
Land	35%	35%
Gemcinde	14%	20%

3. 유럽공동체 차원의 국가 및 지역간의 불균형

(1) 회원국들의 경제력 격차의 전개과정

활기찬 경제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유럽공동체 건설의 초기 15년은 그 후에 공동체에 합류하게 된 여섯개의 다른 나라들을 감안하더라도 일인당 국내총생산(GDP) 면에서 양극단에 선 국가들 간의 상대적인 수렴을 가능케 했다. 1960년부터 1974년 사이에 1인당 국내총생산 또는 폐고용인당 국내총생산(노동생산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표시한 차이는 거의 1/3이 줄어들었으며 지역간의 불균형도 마찬가지로 이와 병행해서 축소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1인당 노동생산성을 확실히 개선됐지만 이는 그곳의 인구가 부유한 지역으로 옮겨간 결과에 의한 것이다.

1974-1985년간의 공황과 수렴의 중단: 1974년부터 시작된 공황의 국면은 일반적으로 매우 큰 실업의 증가와 공동체의 모든 지역에서 수렴과정의 중단을 보이게 된다. 1976년부터 1985년까지 공동체의 가장 발전된 25개 지역들(NUT II의 수준에서)의 실업율은 2.5%에서 6.5%로 증가한 반면 고용면에서 가장 열악한 25개 지역의 실업율은 8%에서 21%로 되었다.

양극단의 지역간의 격차는 두배 이상으로 되었다. 경제공황은, 가난한 지역의 인구증가가 나머지 지역보다 더 지속적인 반큼, 그런 지역의 고용사정을 더더욱 악화시켰다. 실업의 영향은 마찬가지로 부문별(섬유, 조선, 제철)공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오래된 공업지역에도 타격을 주었다.

1986년부터의 수렴의 재개: 1986년부터 관찰된 경제회복은 전체의 거시경제적 변동 및 부문별 공황에 매우 민감한 지역적 불균형을 축소시켰다. 사실, 그리이스가 심각한 공황을 겪은 반면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정도는 약하나 아일랜드는 유럽공동체의 평균보다 높은 성장을 보였다. 각 지역에서의 실업 통계도 마찬가지로 수렴과정의 회복을 보여준다. 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관찰된 실업율은 1986년부터 정기적으로 낮아져서 1989년에는 9.3%에 달하고 1990년에는 8.7%에 달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황은 나아졌으나, 실업율이 4%미만인 지역들(10개 독일지역, 루셈부르크, 東앵글리카, 오타디쥬)과 실업율이 15%가 넘는 지역들(스페인의 11개지역, 이탈리아의 5개지역, 랑캐스터-루시옹,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프랑스의 해외속령)간에는 중대한 격차가 존재한다.

가입 확대와 지역적 불균형-EC의 계속적인 세번에 걸친 확대가입(1972, 1980, 1986)은

그 지역적 불균형을 상당히 증폭시켰다. 매년 확대가입 때마다 새로운 회원국 중의 하나는 일인당 국내총생산에 있어서 최하위 국가군에 추가되게 된다(1972년의 아일랜드, 1980년의 그리이스, 1986년의 포르투갈). 전체적으로 경제사회적 불균형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가입 후에 약 1/3이 증가했다. 서부 및 남부의 주변부에 사는 공동체 인구의 1/5는 공동체 평균의 75%에 못미치는 평균소득으로 생활한다. 회박한 인구밀도, 농업인구의 높은 비중, 활발한 인구증가는 공동체의 새로운 빈곤 지역의 특징이다.

또 가입확대로 인해 심화되는 이질성은 유럽의 구조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이해의 충돌을 증폭시킨다. 가장 가난한 국가들은 연대(solidarité)를 요구하고 거기서 경제사회적 일치의 절실한 필요성을 호소한다. 반면에, 가장 부유한 국가들은 경제사회적 일치가 단일시장과 경제화폐 연맹으로 인해 저절로 확립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지역문제의 현실

1) 지역구분 체계: 오늘날 유럽통계국(EUROSTAT)과 구성국들은 지역의 세가지 분할 수준을 구분하는 단일한 준거틀을 가지고 있다. NUTS I이라고 불리우는 통계적 지역단위 수준은 69개 유럽지역들을 구분한다.(서독의 16개 란드, 프랑스의 7개 국토관리 경제지역….)NUTS II로 불리우는 수준은 지역적 불균형의 분석을 위해서 167개 지역을 구분한다.(해외속령을 포함한 26개 프랑스지역들, 17개의 에스파니아 자치단체들, 20개의 이탈리아지역들), NUTS III수준은 824개 지역을 포함한다.(95개 프랑스지역들, 영국의 65개 군 및 지방당국들) 그리이스 포르투갈 또는 아일랜드 등의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믿을 만한 지역통계를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2) 지역적 불균형의 지표: 지역적 편차를 묘사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두 척도인 일인당 국내총생산의 차이와 실업율의 차이에서 출발하여, 위원회는 공동체 167개 지역을 분류하는 이른바 종합적 지표를 확정했다. 그리이스, 아일랜드, 이탈리아의 메쓰코르노, 포르투갈의 전체와 스페인, 북아일랜드, 프랑스의 해외속령의 3/5이 가장 낮은 수준의 종합지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지표들은 지역적 불균형을 보여 준다. 가장 가난한 지역은 대개 낮은 노동 생산성(노동인구당GDP)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반대로 노동력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달하며 그래서 외래의 투자자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유럽공동체 가운데서 진전되는 사회적 조화의 효과로, 상이한 지역들의 임금비용간의 수렴은 사업이 덜 생산적이고 덜 경쟁적이고, 시장은 더 멀리 떨어진, 이 낙후된 지역들을 향해서 투자자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한다. 대체로 주변에 위치하고 공동체의 중심지역(런던-밀라노의 유명한 軸)에 비해서 소외된 지역에서의 경제적 사회간접시설(교통, 에너지 원거리통신)의 불충분성은 그곳의 발전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국가들은 가장 낙후된 그들 지역의 낙후성을 막을 수 있도록 사회간접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에 찬성한다. 그런데 사회간접시설에 있어서의 격차는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3) 문제지역들의 범주: 구체적인 조치들을 정당화하는 문제지역의 여러 범주들이 구

분될 수 있다.

- 우선 일인당 국내총생산에 있어서 공동체 평균의 75% 끝에 못미치는 이른바 저 발전지역들이 있다. 그곳에는 공동체 인구의 20%인 거의 6천만의 유럽인들이 거주하여 「구조기금」의 개혁에서 나온 새로운 지역정책의 특별한 대상이 된다.
- 「사양산업지역」은 2차 산업 비중이 공동체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서 중요한 산업상의 고용 상실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율이 특징이다. 이 지역은 공동체 인구의 15% 이상을 차지하며 영국의 중부와 북부, 프랑스의 북동부의 활성지역 발론지방, 스페인의 북동부, 르트의 몇 지역들이 이에 해당된다.
- 농업지역은 농업활동 인구의 비중이 공동체 평균(9%)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저발전」 지역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들을 포함한다. 프랑스의 남서부, 바이에른 하류 등이 그 지역들이다. 농업인구는 공동체에서 계속 감소하지만 70년대에 비해서는 완화된 속도로 감소한다. 오히려 농촌지역은 인구감소라는 이전의 경향의 반전을 경험한다. 많은 프랑스 지역(중앙산악지대와 코르시카), 이탈리아, 독일 또는 영국의 지역에서 농촌으로부터의 이동은 전통적인 중심의 대도시의 매력 상실, 보다 나은 생활의 틀을 찾으려는 도시인들의 희망, 농촌 산업들의 다양화의 영향으로 반전된다. 반대로, 유럽의 주변 지역에서는 농촌은 계속해서 황폐되어 간다.
- 문제 도시지역들: 인구증가가 너무 큰 남쪽 변경의 몇 도시들(예를 들어서 나폴리) 또는 반대로 쇠퇴에 직면한(영국) 유럽 북부의 몇 도시들로서 이 지역은 유럽공동체가 참여해서 사회적 활기를 주는 지역정책사업의 대상이 된다.
- 국경지역들: 공동체 내부국경 철폐의 전망 속에서 국경지역은 미래의 단일 시장의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다. 1986년 창설된 유럽개발국(PED)은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세 국경선을 타고 있으며, 심한 제철공황이 닥친 공업 지구를 재활시키고자 노력한다. PED의 목표는 1995년에 여기서 8000자리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자아르, 로렌, 룩셈부르크도 마찬가지로 협력을 했다. 또한 켄트, 발로니가 긴 북쪽 지역 프랑스, 스페인의 피레네 지역(피레네 노동 공동체), 프랑스 스위스의 쥐라 지역, 서독 벨기에, 네덜란드는 Meuse-Rhin지역에 대한 협조와 합의를 도출했다. 대체로 고립적이고 소외된 외부국경들(에게해의 섬들, 해안북부)이 특히 지원을 받았다. 유럽변경지역은 그들의 극단적인 소외, 고립, 기후조건들(해외속령들의 열대 기후)에서 오는 약점 때문에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얻어냈다. 해외속령은 1989년 12월에 POSEIDOM(해외속령들의 원거리 및 고립성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선택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덕분으로 그들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필요한 경우에 공동체의 일정한 규정들로부터의 예외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아소르, 마데이라, 카나리를 위하여 이와 비견되는 프로그램이 채택되었다.

V. 지역정책

1. 유럽공동체 지역정책의 정의

단일 법령에서는 유럽 공동체의 지역정책의 목적으로 사용될 기금들을 구조적 목적의 기금(基金)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그 기금의 목적이 지역경제의 자립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산업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 차원의 지역정책에 있어서 또한 중시되는 것은 단일시장(單一市場)의 조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유럽공동체의 지역정책은 공동체의 기구들이 1957년 로마 조약의 전문을 기초한 후에 세워진 목적 가운데 하나인 “상이한 지역들 간의 격차와 저발전국의 후진성을 줄여서 회원 국가의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여받은 수단의 총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두번째 의미에서는 지역정책은 재정기구인 유럽 지역발전기금(FEDER)의 사업에 국한된 좁은 범위를 가질 수 있다. 유럽 공동체는 조약 발효 후 18년 이상이 지난 1975년에 이 기금을 두게 되었다. 1988년의 구조기금의 개혁이 있기까지 FEDER의 역할은 예산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제한된 상태였으며 사실상 회원국들의 지역정책 비용(費用)을 유럽공동체 기금으로 충당하는 데 불과했다. FEDER은 단일 법안의 130C조에 의기해서, 사후적(事後的)으로 지역개발에 참여하여 지역적인 주요 불균형의 시정, 저개발 지역의 구조조정(構造調整) 그리고 斜陽產業地域의 재전환(再轉換)에 기여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그런 목적에 준해서 사용되게 되었다.

세번째 의미에서, 유럽공동체의 지역정책은 이른바 構造的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금 전체에 근거하고 있다. FEDER과는 별도로 처음부터 로마조약의 조문상에 명시된 유럽 사회기금(社會基金)은 근로자들의 고용의 편이와 지리적, 직업적 이동을 촉진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실업은 특히 저발전지역과 사양산업지역에서 심각하며, 이 지역은 또한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다. 이는 FEDER(이하: 발전기금)와 비슷한 크기의 예산을 갖는 유럽사회기금(이하: 사회기금)에서 지원하게 되는 직업교육(formation professionnelle)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밝혀 준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 구조기금 “FEOGA”방향조정 분과”는 FEOGA 즉 유럽방향조정 및 보장기금(이하: 보장기금)의 한 부분이며, 실질적으로 그 기금의 90% 이상을 사용하여 시장 공동조직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의 가격 보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또한 농업개발의 구조조정, 농촌의 사회간접시설, 농산물의 가공과 상품화를 위한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정책에 기여한다. 유럽투자은행(이하: 투자은행)은 1957년 로마 조약(제 129조)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서 대출의 상당 부분(70%)이 지역발전으로 돌려진다. 부문별의 기구로서는 유럽석탄 철강 공동체(CFCA)가 있다. 이 기구의 원조와 신용대출은 유럽공동체의 지역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 사양산업지역에 대하여 주로 혜택을 부여한다.

2. 유럽공동체의 지역정책의 주체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진행된 유럽공동체의 구조기금의 개혁은 그 지역정책을 관리하는 데 있어, 많은 권한을 위임받은 집행위원회의 중심적 역할을 부각시켰다. 또한 각 회원국 내에서 오랜동안 소극적 입장에 머물러 있었던 대부분의 지역은 이제 지역정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그 실제사업상의 구체화 단계에까지 중앙정부 당국 및 유럽공동체 당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정책의 주체들이 지역정책에 참여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 간의 역학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지역자치체

공조체제를 통해서 발전계획의 수립, 유럽공동체 원조장치에 관한 협상, 사업의 수행, 평가 및 재정조달 문제에 관하여 집행위원회와 관계를 갖는 지역자치 기구는 구조기금의 개혁 이후 유럽공동체의 지역정책에서의 중요 의사주체가 된다. 집행위원회가 우선시 하는 공조체계는 각 회원국의 관습과 현정질서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정도가 다르다. 연방국가인 독일과 얼마전부터 연방이 된 벨기에는 그 연방 안의 州와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 각 주는 유럽공동체의 창설 때부터 유럽공동체 정책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유럽공동체가 그 州들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분야에서 조치를 취하려 할 때에는, 州들을 대표하는 연방 상원에 자문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1959년부터 주의 옵저버가 유럽공동체에 과연되어 주당국에 공동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그 옵저버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회에서 독일대표가 되기도 한다. 독일에서는 1969년에 창설된 공동 사업을 통해서, 州정부와 연방정부는 지역발전 사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벨기에는 1970년부터 시작된 헌법개정의 과정에서 국토관리와 지역정책의 문제에 관해서는 세 개의 지역(프랑드르, 왈로니, 브뤼셀)들에 점차로 큰 권한을 부여하고 결국에는 전권을 위임했다. 독일의 州들과 같이, 벨기에의 지역들도 대체로 집행위원회 이외에 자문기구인 평의회 내에서 국가과연 대표들과 연결되어 있다.

연방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 그 중에서도 특히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아스, 텐마크는 이론상으로만 공조체제를 실천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 국가에서는 실체적인 지방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브뤼셀의 집행위원회에 제출되는 이들 국가의 지역사업계획은 영토 전체를 범위로 하는(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아스) 국가적 범위에서 작성된 것이다. 포르투갈에서는 아소레스와 마테로의 자치정부만이 공조체제에 참여한다. 특별히 그 지역들은 경제·사회발전 문제에 있어서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중간적인 입장으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이 있다. 이들 네 나라는 계획과 프로그램의 확정과정에 지방의원들을 어느 정도 폭넓게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스페인의 17개 자치지역은 과거에 비해 확대된 권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마드리드의 중앙정부는 이 지역이 집행위원회와의 교섭에 나서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계획상 제시된 대부분의 설정방향은 지역에 대한 자문과 참여 없이 국가적 범위에서 확

정되었다. 1970년 이후로 그 지역참사회를 보통선거로 구성하는 20개 지역을 갖는 이탈리아는 스페인과 같이, 많은 부분이 지역별로 작성되지 않은 방향설정과 재정조달의 계획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프랑스에서는 지역참사회는 대부분, 국가-지역 간의 계획 계약의 정신에 따라 계획의 확정에 참여했으며, 집행위원회에 의해 조직된 공조체계에도 참여한다. 영국에서는, 공조체제는 전문화되고 분권화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거기에 결합되고 도시와 평의회의 대표들이 참여해서, 공조체제가 실속있게 유지되고 있다.

지역이 결속력 있는 사회로 존재하고 또 인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곳에서는, 지역은 집행위원회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역은 회원국들의 접경지역과의 사이에 국경을 초월하는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그 공동계획에 대한 유럽공동체 기금의 지원을 요청한다(이는 1990년 결정된 유럽공동체 정책인 INTEREG의 대상이다). 집행위원회는 국경선 양쪽에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유럽공동체의 원조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공동기구를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그러한 과정이 계속된다면, 유럽공동체의 원조 협력이 일차적으로 회원국의 중앙당국으로 가게 된다는 원칙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각 지역은 유럽국경지역의 협회, 알프스지역 평의회, 피레네지역 노동공동체, 산업적 전통이 있는 지역의 노동공동체, 국가수도권 지역의 협회 등을 조직하고 서로 간에 협조를 한다. 또한 지역들은 1985년에 유럽지역 발전센터(CEDRE)라는 지역간 연구기관을 창설했다. 약 150개 지역이 참여하는 유럽지역 회의가 설치되었다. 집행위원회는 1988년, 회원국들을 가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직접적이고 비공식적인 자문기관으로서 42개 지역대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자치기구자문 이사회」를 창설했다. 이 지역대의원은 지역 및 지방 의원의 삼 대 단체인 유럽지역회의, 도시 및 지방주권 국제연맹, 유럽코뮌 및 지역 이사회의 공동 추천으로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임명된다. 집행위원회는 지역정책의 방향 설정 문제에 있어서 이 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을 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이 여러 협회들에 적은 액수이나마 신용대출로 연구지원금을 지불하게 되었으며, 이 연구지원금은 회원국의 사전 경합지원서의 필요없이 집행위원회가 지출한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유럽공동체의 지역정책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그 역할의 확대를 주장하며, 또 지역의원들에 따라서는 보통선거로 선출되는 유럽의회와 병행해서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지역상원(Sénat de régions)을 두는 유럽양원제의 확립을 제안했다.

여러 회원국들이 초기부터 냉담한 입장을 보였지만, 지역 평의회는 이제는 이미 정착된 개념이 되었다. 유럽연맹에 관한 새로운 조약의 틀 안에서 결성된 이 평의회는 회원국들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발전에 관련된 문제들에 관하여 특별 자문에 응한다.

(2) 중앙당국

각 회원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에 준해서, 유럽공동체의 지역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행한다. 그 회원국들은 집행위원회에 수혜대상

지역의 폭복을 제시하고, 발전계획 및 경합지원서를 제출한다. 회원국들의 동의가 없이는, 유럽공동체의 원조장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 야기되는 불리한 재정적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유럽공동체 원조장치의 채택은 집행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가운데 진행된 진지한 협상과정의 결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회원국들은 집단적으로 세개의 자문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여 각국의 의견을 제출하며, 집행위원회는 다수국이 일정한 사안에 있어 합치된 의견을 갖는 경우에 그 의견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집행위원회는 다양한 회원국들의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서로 다른 입장들을 접하게 된다. 독일, 베네룩스삼국, 덴마크, 프랑스, 그리고 구조기금 개혁 이후에는 그 참여 비율은 작지만 영국등이 유럽공동체 예산에 있어서 純 기여국가들이다. 이들 회원국은 유럽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일치를 목적으로 한 단일 법령에 따른 정치적, 법률적 규약들에 구속을 받지만, 연대(連帶:solidarité)를 위한 비용을 제한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純 기여국가들은 자국 지역들의 이익을 위해서 구조기금의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순기여국가들 가운데도 미묘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서 영국은 무엇보다도 제5b번목표(농촌발전)와 프랑스의 우선적 관심대상인 보장기금-방향조정분과를 축소하려 하고, 가능한 한 산업적인 재전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제2번목표를 강조한다. 純受惠國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의 순서-은 그 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 즉 연대와 일치라는 목표가 다른 목표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유럽공동체의 정책은 우선적으로 저발전지역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3개 소국-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이 항상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관점을 공유하는 것만은 아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양국은 그밖의 제2,3,4번 목표에 따른 수혜국이기도 하고, 공동시장과 장차 있을 경제·화폐연맹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나라들이기도 하다.

각국의 중앙행정부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유럽공동체의 지역정책을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파리에는 지역(région) 도지사들로 조직되는 국토관리 및 지역사업 대표부(Délégation)가 있어서 세 개의 기금간에, 그리고 각 지역간에 신용을 분배하는 문제에 관하여 집행위원회와의 협상을 하는 대표의 자격을 위임받았다. 다른 권한을 가진 부서와의 의견불일치가 있는 경우(사회기금에 관해서는 사회부와, 보장기금-방향조정분과에 관해서는 농림부와), 수상이 중재를 한다.

(3) 유럽공동체의 기구

유럽공동체의 수준에서는 이사회(Conseil de l'Europe)는 구조기금 개혁 이전에 가졌던 권한의 일부를 집행위원회에 위임한 반면, 유럽의회는 사실상 관찰자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 1) 이사회: 집행위원회의 제안과 1988년 2월 11-13일 브뤼셀 유럽수뇌회담(Conseil

european)에서 정치적 조정이 있은 후, 이사회는 1988년 6월과 12월, 구조기금을 개혁하고 유럽공동체의 지역정책을 관리할 책임을 집행위원회(Commission)에 위임했다.

따라서 이사회는 1993년 말까지는 새로이 개입하지 않는다. 1993년 말은 저발전지역들(제1번목표)을 선정한 새로운 목록을 다수결로써 채택해야 하는 5년의 기한이 끝나는 시점이다. 이사회는 또한 1993년 말까지 만장일치방식으로 마스트리히트 유럽수뇌회담에서 이루어진 구조기금 관련 규정들의 수정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마스트리히트 수뇌회담은 낙후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조정되도록 할 것을 결의했다.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이사회는 3대 주요예산 당국이지만,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기금 전체의 예산은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의 공통적 전망에 따라서, 1992년 말, 다개년도 방식으로 확정되었다. 집행위원회는 매년 규정에 따라 과해지는 제한의 범위 내에서 그 단독 책임 하에 향후 수년 동안, 5개 목표들 간에 전체 예산을 분배하는 계획을 세운다. 연도별 예산결정 과정의 구조 속에서, 이사회는 발전기금, 사회기금, 보장기금-방향조정분과 사이에 「구조기금」의 낭비년도분 전체 예산의 분배에 대한 승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가 가지는 그 자유재량은 다분히 이론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년간의 예산전망에 의해 대폭 제한되고, 5개년 프로그램은 5개의 서로 다른 목표 사이에서 집행위원회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며, 이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을 위한 유럽공동체 원조장치와의 연계 속에서 결정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사회의 공식활동 이외에도 6개월 임기로 승계되는 의장단은 지역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1983년부터 구조기금 개혁의 설계자의 역할을 했으며 개혁이후에는 구조기금 관리를 담당한다. 집행위원회는 공업적 재전환과 농촌발전의 목표지역의 수혜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제3,4번 목표에 관한 방향성을 채택하며, 또한 이해당사 회원국과의 합의 하에 유럽공동체 원조장치를 인가한다. 위원회는 구조기금 지원을 위해 경쟁응모를 실시하고 유럽공동체의 이니셔티브를 규정으로서 공포한다. 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의 모든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100개 이상의 평의회에 참여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집행위원회는 事前에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평의회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 물론 그 의견은 자문적인 성격이 있을 뿐이다.

집행위원회 위원들은 지역정책에 관련된 4개의 부서를 통해 권한을 행사한다. 16번지 역정책부 「낙후지역들과 쇠퇴하는 공업지역들」의 부서장은 발전기금을 관리하고 5번사회부 「사회적 목표들」의 부서장은 사회기금을 관리하며, 6번농업부 「농업적 목표5a,5b」의 부서장은 보장기금-방향조정분과를 관리한다. 끝으로 12번 부서는 세 구조기금들을 조정할 책임을 맡고 있다. 사업에 대한 국가나 지역의 원조기구를 심사하는 4번 「경쟁」 부서장의 중요한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유럽공동체 원조장치가 확정되고 유럽공동체 이니셔티브의 定義가 내려진 이후에, 유럽투자은행 및 기타 환경, 어로, 교통, 에너지, 공업, CFCA 관련 부서들도 각 부서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받았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공조체제를 함께 유지할 회원국들 및 해당 지역과 유럽의회를 조정하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

3) 의회: 의회와 의회내의 지역정책 집행위원회는 항상 구조기금에 큰 관심을 보인다. 농업에 대한 자동적인 의무적 지출의 경우보다 자유재량의 여지가 큰 구조기금의 지출은 유럽의회 의원들이 대표하고 있는 각 지역과 지방에 이득을 주는 짓이기 때문이다. 유럽의회는 1988년 6월의 규정에 대하여, 자문기관으로서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1988년 12월에 채택된 규정들에 대해서도 단일법령으로 확정된 협력과정의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했다. 다수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는 유럽의회는 1988년 12월에 유럽공동체 지역정책에 관한 결의안과 유럽공동체 지역화 현장을 채택했다. 유럽의회에서 채택된 이 현장에 따르면 지역은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된 의회를 가져야 하며, 행정권한을 부여받은 지역정부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권한은 국가적 수준보다는 지역수준에서 보다 잘 관리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주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은 재정적 독자성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 및 유럽공동체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의회는 이와 같이 현재 12개국에서 실시 중인 대부분의 현정체제를 훨씬 뛰어넘는, 지역 권한의 강화에 찬성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의회의 지역정책 집행위원회는 지역정책의 미래에 관한 그 연구작업의 과정에서 지역대표자들에게 자문하려고 한다. 보통선거로 선출되었으나 자문기구의 역할 이외에 예산안 채택 이외에는 어떠한 실권도 없는 의회는 이사회, 집행위원회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 이 불편한 관계에 구애받지 않는 집행위원회는 유럽공동체의 정책에 관해서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자문하고 지역정책의 실행상황에 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다. 이사회와 의장도 의회의 지역정책 집행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한다.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구조기금에 대한 의회의 예산상의 재량권은 일정한 경우 의회가 결정권을 갖는 비의무적 지출에서도 아주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1988년 6월에 결정되어 1992년 예산까지 포함하는 다개년 재정전망에 이것 역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4) 경제사회 평의회: 경제사회 평의회는 로마조약에 의해 창설된 자문기관으로서 이 사회에 의해 임명된 경제 및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구조기금 개혁을 위한 규정들에 관해, 그 의견을 제출하는 임무를 가졌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그 유럽공동체 정책에 관하여 경제사회 평의회에 자문한다.

(4) 기업과 사회적 공조체들

각 지역의 기업도 유럽공동체의 지역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업은 대체로 공학상단협회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그들이 유럽공동체의 원조를 직접간접으로 획득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구조기금의 재정지원을 받는 부문은 대규모의 공공사업, 교통체계, 각 수준의 연구 용역회사, 외무입지를 모색하는 기업 등이라 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한 기업과의 공조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면, 지역정책 및 유럽공동체 원조장치의 우선 순위 결정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공조관계를 지니고 있다.

경제사회평의회와, 노조대표를 포함하는 조약 124조에 규정된 평의회가 가지는 자문

기능을 넘어서는 그런 공조관계에 관해서는 규정에 언급이 없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각 회원국의 사회적 공조체들에게 지역정책의 수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취했다.

유럽공동체 기구, 회원국, 지역 및 지방자치기구, 기업, 사회적 공조체 등 유럽공동체의 지역정책의 주체들은 크게 다각화하고 있다. 이제 브뤼셀에서 회원국 공무원들과 집행위원회의 부서 간에 지역정책이 은밀하게 결정되던 시대는 지난 것이다. 이제부터는 집행위원회는 지역 주민 등, 모든 수혜자들이 지역정책의 실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광고를 해야 하게 되었다. 집행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유럽공동체 인구 342백만의 42%인 수혜대상지역 주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유럽공동체의 사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 유럽공동체 지역정책의 발전과정

(1) 지역정책의 출범

로마조약 발효 때부터 1975년까지는 유럽공동체는 지역정책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역 불균형의 축소라는 조약 전문의 지극히 일반적인 목표는 그 작성자들의 의도로 본다면 반드시 유럽공동체 지역정책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60년대에는 유럽 의회만이 유럽지역의 영토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지역사업에 대한 신용제공, 지역 문제들에 관한 작업을 하는 유럽공동체의 집행위원회의 업무 강화 등을 권고하는 보고서들을 채택하면서, 지역적인 불균형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1968년 DG XVI-지역정책을 담당한 유럽공동체의 집행위원회(Commission)의 새로운 부서-의 창설 1년 후, 집행위원회는 지역 발전계획 수립과 지역발전을 위한 수혜 기금 창설을 규정한 계획안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유럽 사회정책 및 로마조약 123조에 의거하여 창설된 사회기금에 주어진 한정된 사업수단들은 그 기금의 상당 부분이 가장 낙후된 국가들에게 공급되면서(특히 직업교육에의 원조로) 지역격차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의 사업들은 1951년 파리조약으로 창설될 때부터 사양산업지역인 석탄 및 철강공업 지대를 위한 것이었다. 이 기구는 공업투자 신용대출, 석탄제철 지대의 실직 노동자들의 재고용에 기여하는 각종의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출, 노동자들의 주택을 위한 대출을 행한다. 또한 연구 및 학업에 대한 사회적 원조도 인가되었다.

끝으로 로마조약으로 창설된 유럽투자은행(BEI)은 그 자본을 회원국으로부터 모집한 자율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신용대출을 통해서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의 투자와 사회간접시설을 금융 지원한다. 이 은행은 그 창설 당시부터 가장 저개발된 지역들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는 BEI의 대출의 70%가 그 지역에 공급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대출은 가장 유리한 시장 조건에서 직접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주어지거나, 또는 중소기업

육성, 소규모 사회간접시설의 개발 촉진을 위해서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총괄적인 대출 경로를 통해서 승인된다.

(2) 발전기금의 창설로부터 구조기금의 개혁에까지

1972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에까지 유럽공동체가 1차로 확장된 결과, 유럽공동체는 1975년에 지역정책 기구인 유럽 지역발전기금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76-1978년간의 사업을 위해 채택된 1975년의 1차 발전기금은 참된 의미에서의 지역정책의 도구라기보다는 오히려 금융의 균등할당기구였다. 발전기금은 대개의 경우, 개별적으로 각 회원국이 사전에 결정한 국가별 지역정책 사업에 대한 지원에 전적으로 자금을 공급했으며, 보조금은 각료이사회에서 결정된 국가별 할당량에 따라 사전에 배분되었다.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보조지원서(*demande de concours*)에 준하여 미리 결정되는 발전기금 개입사업은 회원국들이 명시하고, 또한 국가별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완전히 지역화된 사업중에서도 사회간접시설과 구체적 투자 계획으로 한정되었다. 회원국의 보조지원서는 1975년의 발전기금에 대한 첫번째 규정시부터, 지역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한 진단과 발전목표, 고려의 대상이 되는 사업,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포함하여 회원국들이 수립하는 수개년간에 걸친 지역개발 계획의 구도로 짜여져야 했다. 그러나 이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審査*는 대체로 형식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1975년의 발전기금은 낙후된 회원국(유럽공동체 예산에 대한 그들의 기여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전기금으로부터의 순수혜국인 이탈리아, 영국, 그리아스, 1986년부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까지)을 위해서, 다른 회원국들(특히 서독, 베네룩스삼국, 덴마크, 그 다음은 보다 작은 규모로 프랑스)이 지출을 하는 예산상의 재분배를 하는 기구였다.

1975년부터 유럽공동체가 참여했던 지역정책이 계속적인 수정과정을 거쳤지만 불충분하다는 점, 3차에 걸친 확대가입으로 초래된 지역적 불균형의 심화, 저발전국 정부에 있어서 단일 시장의 전망으로부터 생겨난 불안 등의 여러 요인이 구조기금의 개혁작업을 출범시켰다.

개혁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들은 1986년의 단일 법령(*l'Acte unique*)에 의해 확정되었으며, 그것의 제 130A조와 130C조는 "유럽공동체는 다양한 지역간의 격차와 가장 낙후된 지역의 후진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 그리고 발전기금은 "저개발지역의 발전 및 구조조정과 공업상의 쇠퇴지역의 산업전환에 참여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단일 법령은 두개의 다른 구조기금(사회기금과 보장기금 방향조정분과), 유럽 투자은행 및 이미 존재하고 있던 다른 기구들이 이 목표에 참여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 결과적으로 단일 법령은 세 기금의 임무를 합리화하고, 그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며, 개입사업을 조정하기 위한 그 개혁의 원칙을 확정했다.

(3) 구조기금의 개혁

1) 구조기금의 목표: 우선 구조기금의 액수를 1987년에서 1993년 사이에 두 배로 할 것을 승인하는 예산 조정이 1988년 2월에 브뤼셀 유럽수뇌회담(Conseil européen)에서 확정되면서, 이사회는 구조기금을 개혁하는 다섯가지 규정을 채택할 수 있었다. 과거에 규정되었던 다양한 특혜 사항, 분열 및 희석화를 조장하던 요소들을 대신해서 다음의 5 가지 목표가 대체요소로서 등장했다.

① 낙후지역의 발전 촉진: 소위 제 1번의 우선 목표는 일인당 국내총생산(PIB)이 유럽공동체 평균의 75%에 못 미치는 곳으로써 정의되는 저개발 지역의 발전과 구조조정의 촉진이다. 전체적으로 유럽공동체내에서 거의 6천 7백만명의 주민들- 유럽공동체 인구의 21%-이 발전기금, 사회기금, 보장기금-방향조정분과가 지원하는 이 우선 목표의 혜택을 받는다.

② 사양산업지역의 산업전환을 위한 원조: 그 다음으로, 쇠퇴로 인해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공업 지역은 이른바 제 2번 목표의 대상으로 발전기금과 사회기금(보장기금은 제외)이 참여하는 원조 혜택을 받는다. 유럽공동체의 평균보다 높은 실업율, 유럽공동체 평균보다 높은 공업노동자의 비율, 고용의 뚜렷한 감소 등의 세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1989년에 거의 4천 8백만명으로서 유럽공동체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인구를 포함하는 산업적인 전환지역의 목록을 처음으로 확정했다. 이 목표는 저개발 지역을 위한 것보다 훨씬 적은 신용대출량을 부여받았으나, 이사회 규정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에 사업을 집중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반면에, 그 규정은 사업선정에서의 융통성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 이사회가 제한된 다수결(majorité qualifiée)의 방식으로 세 가지 수혜대상 기준을 개정할 수 있게 했다. 규정에는 또한 집행위원회(Commission)가 수혜대상 지역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개정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끝으로 그 규정은 산업 고용의 대규모 감소를 보인 매우 높은 실업율을 가진 도시들이나, 결정적인 산업부문에서의 상당한 고용손실로 위협받는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들도 집행위원회가 고려대상으로 하는 것을 인정했다.

③ 장기 실업자들과 청년층 실업자들에 대한 원조: 지역화되지 않은 전범위적(horizontal)인 두 목표(3번과 4번목표)는 사회기금만을 사용하며 1년 이상된 실업자들과 25세 미만의 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직업배치 사업을 지향한다. 사회기금은 직업 교육 중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 직업교육의 비용, 새로 창출된 안정된 직업에의 취업알선을 책임질 수 있다.

④ 농촌발전에 대한 원조: 끝으로 공동 농업정책(PAC)의 개혁과 관련하여 두 목표가 농업지역에 혜택을 부여한다. 그 중의 하나는 소위 「제 5a번목표」로서 유럽공동체의 전체 농업지역에서 보장기금-방향조정분과의 원조만으로 농업구조의 적응을 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사업들은 생산의 방향조정과 산업전환에의 원조, 삼림에의 원조, 수익성 없는 사업중단에 대한 지원, 자연적 취약점들에 대한 보상, 환경보존, 청년 농업 가들의 정착, 농업 및 어업 생산물의 가공과 상업화에 대한 원조 등이다. 5a의 전범위

적인 목표와 달리 지역화되어 있는 이른바 제5b번 목표는 발전기금, 사회기금, 보장기금·방향조정분과의 지원을 받아서, 저발전 지역들에 관련된 제 1번 목표에 해당되는 지역들 이외에 농촌지역의 발전 촉진을 겨냥한다.

이 제 5b번 목표는 일면, 가장 낙후된 지역에 특혜를 주는 1988년의 구조기금의 개혁의 논리에 따라 프랑스 내의 몇 지역이 수혜대상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인다.

2) 지역정책을 이끄는 원칙: 구조기금의 개혁은 유럽공동체의 사업을 지도하는 여러 원칙에 따른다.

① 집중(concentration): 구조기금은 우선 저발전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이 원조를 필요로 하는 지역(제1번 목표)을 위해 사용된다.

이사회는 그 효과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전기금의 약 80%는 이 낙후지역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의했다. 공동체적 연대는 필요하나, 그 연대는 곧 그것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집중의 원칙은 또한 사양산업지역(제2번목표)과 농촌 개발지역(제5b번목표)에도 적용된다. 규정은 이렇게 해서 사양산업지역 주민이 유럽공동체 인구의 15%이상을 차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한다. 그러나 집행위원회(Commission)가 수혜대상지역들의 목록을 확정한 이후로 모든 분야에서 받고 있는 강한 정치적 압력은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집중의 원칙에 의하여 제시된 한계를 어느 정도 벗어나도록 했다. 이는 유럽공동체 인구의 40% 가까이가 이상의 세가지 목표의 수혜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②공조체제(partenariat): 그 다음으로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공존의 원리 또는 집행위원회, 회원국, 지역(régional) 및 지방(local) 당국들 간의 협조의 원리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모든 부분이 공동의 목표를 향한 공조자로서」(1988년 6월의 규정의 표현에 의하면) 공조체제는 엄밀하게 말해서, 최종 단계에 유럽공동체의 원조의 실행에까지 이르는 절차의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

이는 지역발전 계획의 준비과정, 구조기금이 우선시할 중심축을 확정하는 유럽공동체의 지원장치(cadres communautaires d'appui)을 집행위원회가 채택하는 과정, 유럽공동체의 기금과 회원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간의 사업예산 분담과정, 이렇게 공동 예산배정된 사업의 수행과 평가과정 등이다. 발전기금의 초기 규정에 있어서의 기술관료적이고 중앙집권화된 과정을 집행위원회, 회원국, 지역들 간의 대화에 의해서 대체한다는 것이다. 유럽공동체와의 교섭에서 일종의 외교적인 권한을 인정받은 지역당국과, 지역에서 자기의 존재를 강화하려고 하는 집행위원회는 공조체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노력한다. 프랑스에서 지역적 분권화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1982년 5월 2일 법률은 외교적인 권한 면에 있어서 지역이 공동의 국경에 접하고 있는 외국의 지방자치 단체들과 접촉할 수 있는 권한만을 열어 놓았다. 그후 프랑스 수상의 행정서신은 브뤼셀의 집행위원회와의 교섭에 있어서 국가독점의 원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행위원회와 정보접촉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사실상 각 지역은 그 권한의 확장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항의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의 제한된 틀을 넘

어서 활동하기도 한다.

기타 회원국들도 그 적극성의 정도는 다르지만 공조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연방국가들(서독, 그 헌법개정 후 벨기에)에서는 공조체제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밖의 대부분의 다른 회원국에서는 방기되었다. 공조체제는 분권화된 지역당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에서는 (아소레스와 마데이라의 자치정부들은 예외로 하고) 거의 형식적이다.

③ 보완성(*complémentarité*) : 지역정책은 유럽공동체의 원조가 국가나 지역 단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행동으로서만 개입할 것을 규정하는 보완성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유럽공동체의 원조는 항상 회원국들, 지방 및 지역자치 단체들에 의해 승인받은 공공지출에 대한 비례분으로만 존재하고 평가된다. 저발전 지역의 경우에는 공공지출에서 최소한 50%,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25% 수준이다.

④ 보조성(*subsidiarité*) : 유럽공동체를 정치적 연맹으로 이끌어가려는 성격을 띤 조약개정 논쟁의 와중에서, 회원국이 유럽공동체 수준에서 더 잘 해결될 수 있거나 국경선을 무시해야 하는 과제만을 유럽공동체에 이송한다는 보조성의 원칙이 자연스럽게 그 지역정책에 대하여 과해지게 되었다. 우선 그 지역개발의 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회원국, 그리고 혹시 지역당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권화된 지역들이다. 유럽공동체는 대상회원국 및 지역의 상대적인 발전수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보조적인 명목으로서밖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⑤ 추가성(*additionalité*) : 추가성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위원회는 유럽공동체의 예산공급이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점차 감소해 가는 예산조달을 대신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⑥ 프로그램화(*programmation*) : 프로그램화의 원칙은 회원국들의 보조지원서들이 대부분 세부적인 구체적 계획의 형태를 취했던 과거의 체제에 상반되는 준칙이 된다. 회원국은 대규모의 계획(grands projets)만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대개의 경우에 회원국은 유럽공동체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하여 그들의 지역발전 계획의 방향성을 실제에 적용하는 다개년 시행프로그램을 브뤼셀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세 기금 간의 조정(*coordination*) : 세 기금 간 조정 원칙에 따라서 각 기금에 정해진 목표들, 그들의 운용 및 사업개입 규준은 공통적인 것으로 되었다. 회원국들이 집행위원회에 제출 지역 발전 계획은 세 기금과 연관된 방향성과 예산공급의 구도를 명시해야 한다.

개혁 이전의 상황과는 달리, 세 기금은 수혜대상지역 · 개입비율 · 계약 · 지불 · 지출통제의 양식에 관한 공통의 처리방식을 따른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세 기금들의 참여사업 내용의 통합은, 각국 공무원의 과거 관행과 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위원회 산하의 부서들의 관행을 고려해 보면, 아직은 어느 정도 인위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⑧ 양립가능성(*compatibilité*) : 구조기금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사업은 유럽공동체의 정책 전체와의 양립가능성 원칙을 지키면서 행해져야 한다. 협력을 얻기 위하여 회

원국들이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 프로그램과 계획은 유럽공동체 정책의 성격, 그 중에서도 특히 경쟁, 공공재 시장의 규준, 환경보호의 규준들에 힙치되어야 한다. 구조기금의 규모가 두배로 커짐에 따라, 조약의 수호자(gardienne des Traitées)라는 공식적 직함을 가진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과 지방 및 지역 당국들이 유럽공동체 정책의 수많은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그 통제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공동체 기금이 투입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양립가능성의 원칙을 따르게 한다. 유럽공동체의 원조장치들은 회원국이 몇가지 유럽공동체의 조치들을 준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특별조항을 포함한다.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유럽공동체의 조치를 만약 존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력규모를 축소하고,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것도 고려한다.

⑨ 일관성(cohärence) : 회원국들은 유럽공동체의 협력을 얻기 위해 제출한 그 지역발전 계획들이 자국의 경제·사회정책과 일관적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사실상, 모든 지역정책은 그것이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는 전체 거시경제 정책과 정확히 연결되어야 한다. 난일법령은 회원국들의 경제·사회 정책의 운용에 대하여 다음의 두 의무(義務)를 규정한다.

- 회원국들은 한편으로는 각국의 경제정책을 그들의 경제적 경기변동간의 수렴을 증진 시키도록 조정해야 한다.
- 회원국들은 또 한편으로는 유럽공동체 지역들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그들의 경제정책을 인도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전자의 조정 의무는 경제·화폐적 연맹의 과정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더 구속력을 띠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과 단일화폐의 창설이 끝나면 국가적 화폐 및 예산정책의 자율성이 여지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두번째의 조정의무는 저발전국가뿐 아니라 부유한 국가에게도 과해지는 것이지만, 실제로 있어서 본다면 그것은 그 낙후된 지역들의 균형 발전을 이루게 하는 효과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구조기금 수혜국에게 과해지는 것이다.

10 회원국 지역정책 간의 조정(coordination) : 회원국들의 지역정책과 그들 각국의 총체적인 거시경제 정책간의 필수적인 일관성과 관련시켜서 집행위원회는 아직까지 준비 단계에 있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

‘각국의 영토관리 및 지역지원 정책 간의 조정’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1975년 발전기금의 창설과 동시에 지역정책평의회(Comité de politique régionale)가 창설되었는데, 이 기구는 각국 정책이 유럽공동체의 목표와 양립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이를 관찰·비교하는 임무를 떤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회원국들이 1975년의 발전기금 창설 이후로 행해 온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며, 유럽공동체의 원조의 대상이 되는 지역목록을 집행위원회로 송부할 의무를 지고, 지역들에 대한 국가별 지원체계에 대하여 조약의 92, 93조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가 행하는 통제를 받는 이 기구는, 12개국의 지역정책들이 상호간의 조정과정 속에서 집행되게 했다.

(4) 구조기금의 시행과정

1988년 2월 브뤼셀 유럽수뇌회담의 결정에 따라 구조기금 규모의 배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수혜자들에 대한 원조의 제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섯가지 목표와 수 많은 원칙을 부과하는 기금 개혁의 결정적인 관문이었다. 1988년 6월 24일의 규정은 1987년을 기준으로 해서 1993년에는 ECU불변가격으로 기금 규모를 두배로 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구체화한 예산프로그램을 확정했다. 1988년 6월 29일 의회,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가 내린 예산적 규정에 관한 기구간 협정은 1988년에서 1992년까지 유럽공동체 지출의 방대한 규모를 확정하는 재정적 예상에 기초하여 나온 것이며, 여기서는 구조기금에 관하여 프로그램화된 연간 지출총액을 확정했다. 구조기금에 투입되는 액수는 상당히 증가하여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한 후인 1986년 유럽공동체 예산의 7.3% 수준에서부터 1990년에는 21.6%로 그리고 1992년에는 25.4%까지 상승했다.

이사회는 권고사항으로서 집행위원회가 5년을 기한으로 하여, 발전기금에서의 신용대출의 85%를 회원국에게 배분하도록 했다.

1989년과 1990년에 집행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1989년-1993년의 기간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원조장치는 다음의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로, 저발전 지역에 해당하는 제 1번 목표 가운데서는 스페인이 결정적 위치를 차지하여 여기서 그때까지 발전기금 신용대출의 제1수혜국이었던 이탈리아를 앞질렸다. 규정에 따르면, 발전기금이 목표1에 그 신용대출의 약80%를 투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스페인은 발전기금의 신용대출의 약25%를 공급받았으며, 이는 세 구조기금의 전체 신용대출의 20%이다.

둘째로, 영국은 사양산업지역에 대한 제2번 목표에 대해서 행해지는 신용대출의 최대 수혜국이 된다. 이는 발전기금 예산의 15%수준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제5B번목표에 관련된 신용대출의 최대 수혜국이 된다. 그런데 이 마지막 목표에 대해 행해지는 신용대출은 발전기금의 3% 수준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관련된 국가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저발전 지역을 위한 집중의 의무를 준수한다는 조건하에서, 수혜국에 대한 기금의 공여에 이르는 세세한 절차를 집행하는 중심기구가 될 가능성을 주는, 예산상의 많은 개입과 조작의 수단을 갖고 있다.

구조기금에 관련된 다섯가지 규정이 1988년 6월과 12월에 채택된 후, 집행위원회와 수혜대상지역을 가지고 있는 각 회원국은 개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600억 ECU의 신용대출이 예정된 기한 안에 약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대화의 과정을 거쳤으며, 결과적으로 다음의 결정이 내려졌다.

1) 수혜대상지역 분포도(分布圖) 및 신용대출 분배의 집행위원회에 의한 확정: 우선 집행위원회는 규정상으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지역을 위한 집중(concentration)의 원칙에 따르면서, 쇠퇴공업지역 및 농촌개발에 관련된 목표를 위한 우선적인 수혜대상지역의 분포도를 채택했다. 저발전지역의 분포도는

이사회에 의해서 1988년 규정의 채택 이후 확정되었다. 그 다음으로 집행위원회는 발전 기금의 신용대출의 85%를 목표 및 회원국별로 배분하는 데 착수했다.

2) 회원국에 의한 계획의 전달: 회원국들은 1989년, 각 국가가 수혜대상이 되는 목표 각각에 해당하는 그들의 지원계획을 전달했다. 전범위적 목표(사회적 목표들 3,4)에 관한 계획은 국토전체에 대해서 작성되었고, 지역적 목표에 관한 계획은 일반적으로 각 지역에 대해서 작성되었다. 그러나 제1번 목표에 관련이 있는 국가들은 대체로 그 국가 안의 저발전지역 전체를 위한 계획만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는 각각 개발계획만을 제출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국가적 방향성의 중요한 부분을 점하는 저발전지역과 관련된 그들 국가의 통일적 계획을 단지 지역화하는 데 머물렀다. 계획은 사회경제적 상황, 지역의 인구전망을 나타내고, 전략과 고려해야 할 발전의 중심축을 나타내고 자금수요 전체와 거기에 연관된 국가 및 지역별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여 유럽공동체의 기여가 요청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시한다. 그 계획은 또한 고용의 수요공급 간에 존재하는 불균형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기금의 지원을 받아 직업 교육 및 고용의 분야에서 착수할 사업에 대해서 명시한다. 지역적 계획화의 이 복잡한 작업은 다양한 절차에 따라 회원국에 의해서 실행되었다.

계획의 제 1기는 모든 목표에 대해서 1989-1993년의 5개년이다. 단 예외는 쇠퇴하는 공업지역에 대한 것으로서 1991년 말까지의 기간만이 포함된다. 이것은 집행위원회가 이 시기가 되었을 때, 유럽공동체의 개입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회원국은 그 계획 속에 밝혀진 여건을 매년 새롭게 조정할 가능성을 갖는다.

3) 집행위원회에 의한 유럽공동체 원조구조의 채택: 최대한 6개월의 기간 동안 계획을 검토한 후, 집행위원회는 공조관계에 있는 각 회원국 및 지역당국과의 합의에 따라서 정해진 유럽공동체 원조장치들을 확정한다. 유럽공동체 원조장치는 각 목표와 각 지역에 대하여- 3년에서 5년간-재채택된 우선 순위의 축과 기금에 의한 지시적 예산계획을, 회원국, 지방 및 지역자치단체, 간헐적인 민간공조자들에 부과되는 부분을 확정하면서 고정시킨다. 집행위원회, 회원국 및 지역을 연결하는 다년간 발전계약인 유럽공동체 원조장치(*cadres d'appui communautaire*)는 또한 회원국들과 그 지역을 여러가지 의무와 제약에 종속시키는 특징적인 조항을 포함한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들이 있다.

- 구조기금으로부터 그 국가들이 공동재정공급(*co-financement*)을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별 지원정책을 집행위원회에게 보고할 의무.

집행위원회는 그 다음으로는 조약과 국가별 지원책과의 양립가능성, 요청된 공동예산 공급이 가지는 특권적 성격을 강조한다.

-공동시장에 관련된 지침의 준수의무

-예산지원되는 사업들은 환경에 관련된 유럽공동체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은 파급효과와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유럽공동체는 내부의 국경없는 공간창출이라는 목표와의 양립가능성이 없는 공항, 항만, 혹은 다른 사회간접시설 건설의 모든 계획에 대하여 원조를 주는 것을 금한다.

-농업의 구조개선 사업과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간의 조화

예를 들면 집행위원회는 보장기금에 따라 보장된 분야의 높은 비용이 드는 지원으로부터 혜택을 입어 과잉 생산을 증가시키게 될 관개사업에 대한 재정공급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산공급된 사업은 남녀간의 기회균등 면에서 유럽공동체 입법과 양립가능해야 한다.

유럽공동체 위원장치는 회원국만 아니라 분권화된 당국에 의한 유럽공동체 규정의 준수를 통제하기 위해 집행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의 단계를 규정한다. 유럽의 지역정책 대상이 되기를 크게 희망하는 분권화된 당국은 집행위원회와 지역과의 공조관계에 수반되는 이와 같은 반대급부를 과소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공동체 원조장치는, 회원국의 거시경제정책이, 기금들의 원조와 동시에 채택되게 된 지역발전 전략과 일관성을 가질 것을 요청한다. 1989년과 1990년에 집행위원회는 저발전지역에 대한 제1번목표의 10개의 유럽공동체 원조장치들, 산업상의 쇠퇴지역에 대한 목표에서 57개의 원조장치들, 농촌발전지역을 위한 56개의 원조장치들을 채택했다.

4) 회원국에 의한 원조요구의 전달: 다음으로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형태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는 보조지원서를 집행위원회에 전달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실행계획(programme opérationel)의 양식이며 이것은 사업의 통일적인 전체(예를 들어서, 사회간접시설, 또는 농촌개량, 산업전환 실행계획)라고 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그 심사 업무가 과중한 세부사업계획에 비해서 이와 같은 다개년 경합 지원서 양식을 명백히 선호한다. 집행위원회는 과거와 달리 사전에 이미 회원국이 차수한 사업에 대한 원조요청은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행계획은 여러 구조 기금의 재워 별로 제시된 경우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지역별 신용공급의 한계량을 설정하는 유럽공동체의 원조장치는 대체로 단 하나의 실행계획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그 총액이 1천5백만ECU(사회간접시설)나, 1천만ECU(생산적 투자)를 넘는다는 조건에서 수용가능하다.

발전기금의 경우만 보면 회원국들은 유럽공동체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지역적 원조 체계 내에서의 공동금융을 요청할 수 있다(프랑스에서의 국토관리 장려금의 예를 따라서). 물론 이것은 경쟁정책에 합치되어야 한다.

-끝으로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와의 공동합의로 지정된, 지역발전협회-상공회의소 같은 공익적 성격을 띠 지역 매개체에 의해서 관리될 포괄적 성격의 원조요청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에 유럽공동체 기금의 사업에 도입된 포괄적 원조들은 실행계획 및 개별적 사업계획과 달리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융통성 있는 장치는 수용해야 할 개혁에 따른 불가피한 분규의 표적이 되고, 유럽공동체의 원조를 그 고유예산에 편입시켜 집행되게 함으로써 엄격한 통제를 전지하려는, 국가 및 지역행정기구들에게는 인기가 없었다.

집행위원회는 마찬가지로, 연구에 대해서 계획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 보조, 전시적(展示的) 성격의 또는 경험의 교환을 가능케 하는 지도사업계획에 대한 금융지원을 한

다. 일반적 규칙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회원국들의 경합지원서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5) 개입률: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경합지원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공적인 사업과 기타 참여사업의 총비용에 있어서 유럽공동체 기금이 차지하는 개입률을 정한다. 後進 지역의 경우 개입률은 총 75%까지, 공공 지출의 최소한 50%에까지 달할 수 있다. 나쁜 지역 및 목표의 경우에는 총비용의 50%까지 공공지출의 최소한 25%에까지 달할 수 있다. 수입을 창출하는 생산적 투자의 경우에, 그 개입률은 사업의 자기 금융에 비해서 그리 높게 정해지지 않는다.

6) 수혜대상 사업의 폭: 수혜대상 사업의 폭은 목표와 기금에 따라 다르다. 선택 가능한 수단의 폭은 다른 곳보다 저발전 지역의 경우에 더 넓다. 단 과거의 경우 발전기금이 사회간접시설(평균80%)에 지나치게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서, 새로운 규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발전 지역의 설비투자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 및 보건설비를 여기에 포함하여 경제적 잠재력의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간접시설도 재정지원될 수 있다. 반면에 사양산업지역에서는 산업공간의 관리, 고용의 창출이나 발전의 조건을 형성하는 사회간접시설의 근대화만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농촌개발지역에서 수혜가능성은 더욱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농업적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회간접시설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신용의 여유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집행위원회는 발전기금의 사업을 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조사, 경영에 대한 지원, 기술혁신, 정보수집, 재정공급, 보증 또는 지분참여에 의해서 기업의 자본시장에의 접근을 돋는 것, 투자에 대한 원조 등, 중소기업에 대한 원조로 유도하고자 한다. 회원국들은 과거와 변함 없이 도로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공급에 유럽공동체를 참여시키기를 갈망하는 반면에, 집행위원회는 보다 직접적으로 지역적인 기반을 가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상당 수준의 고용창출 잠재력을 제공하면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이론」을 앞세운다.

유럽공동체 전체의 청년 실업자를 및 장기실업자들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기금은 직업교육 및 저발전지역, 농업상의 쇠퇴지역, 농촌개발지역에서의 실업원조사사업의 혜택을 받는 대상 근로자들의 수를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모든 종류의 실업자, 실업의 위협을 받는 사람,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사회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발전지역의 경우에서만 그 대상은 견습·공, 비생산적 공익활동에 종사하는 실업자들, 직업교육중인 청년들에게까지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보장기금-방향조정분과는 보다 광범위하게 저개발지역, 농촌개발지역에서 관개, 토지재통합, 농촌관광, 농업사회간접시설 등에 원조를 제공한다. 구조기금의 개혁이 실행됨에 따라 보장기금-방향조정분과에 있던 특징적인 여러가지의 규정들은 1989년에 개정되었다(농업, 임산업, 어업 생산물의 가공과 상품화에 대한 지원, 농업구조에 대한 지원).

7) 참여와 투자: 회원국의 경합지원서가 일단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채택되면 집행위원회는 그 지출을 행한다. 보조지원서의 처리 및 원조에 관련된 유럽공동체 기구에서의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시간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규정은 비교적 신속한 사업양태를 명시한다. 집행위원회에 의한 경합지원서의 채택은 다개년 사업의 경우에는 첫번째 1년분의 예산지출에 해당되고, 보다 짧은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의 예산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집행위원회는 지출 전체의 50%까지를 ECU로 즉시 선불할 수 있다. 두 번째의 선불도 가능하며 그 나머지 금액의 지출은 사업이 끝날 때 이루어진다. 지출은 회원국이 지정한 당국에 대하여 행해진다. 프랑스의 관례를 본다면 그 지불금은 국가예산을 거치며, 또한 그 종착지(예를 들어 道당국)까지는 국내적 예산절차들을 여러 단계 걸쳐 경과한 후에야 도달하게 된다.

집행위원회로서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가장 빠른 기일내에 비용지출을 약속하고 행하여, 1993년 말까지 개설된 600억 ECU의 신용대출의 이행 및 개혁수행의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적극적인 구조정책을 추구할 필요성과 금융상의 절박성을 과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집행위원회는 1988년 6월에 채택된 유럽공동체의 새로운 재정 관련 규정이 사용되지 않은 신용을 다음기로 이월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촉박한 일정을 잡고 있다.

8) 수행과 평가: 유럽공동체의 사업은 지불에서 끝나지 않으며 재정통제 및 수행과 평가매카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유럽공동체 기금의 올바른 사용, 지나치게 배당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의 책임이 있다. 집행위원회는 예고없이도 현장검열을 행할 수 있다. 사업의 수행과 평가는 집행위원회, 회원국, 지역당국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이른바 수행평의회(Comité de suivie)의 감독을 받는다. 정해진 한계 내에서 동 평의회는 유럽공동체 원조장치의 변경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평의회는 각 목표에 대하여 국가수준에서 그리고 지역수준에서 결성될 수 있다. 즉 1년에 한두번 브뤼셀이나 각국의 수도 또는 각 지역에서 소집되는 총 100개 이상의 평의회들이 있다. 이는 유럽공동체 전체에 정착된 평의회체계(Comitologie)의 긴밀한 망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9) 회원국들을 대표하는 평의회: 집행위원회와 함께 그리고 그 주관하에 회원국을 대표하는 세개의 다른 평의회가 존재하여 유럽공동체 원조장치 계획, 수혜대상지역 목록 확정, 유럽공동체 이니셔티브에 관해 그 의견을 제출할 임무를 맡다. 지역발전 및 재전환평의회는 특히 낙후지역, 쇠퇴산업지역에 관심을 갖는다. 그 평의회는 또한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지역정책 간의 조정과 지역발전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로마조약 124조에 의해 창설된 두번째 평의회는 고용자들과 피고용자들의 협회대표를 동수로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사회적 목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농업구조 및 농촌발전 평의회는 농촌지역에 관련된 목표에 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한다.

10) 유럽공동체 이니시어티브: 각각의 목표에 대하여, 유럽공동체 원조장치가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되면, 이 집행위원회는 유럽공동체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업의 지원을 결정하여 구조기금의 신용대출의 상당부분을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발전기금의 15%, 다른 두 기금에서는 특별한 상한선이 없다.) 집행위원회는 이런 경로를 거쳐서 1989년-1993년의 기간에 약38억 ECU에 해당하는 유럽공동체 이니셔티브의 사업 범

위를 조정·채택했다.

-IVREG계획은 지중해연안의 환경보존, 낙후지역, 사양산업지역, 농촌발전지역의 일부를 지원한다.

-CHAR계획은 광산폐쇄로 타격을 받은 탄광지역을 지원한다.

-8억 ECU가 주어진 INTEREG계획은 특히 내부국경 철폐에 관심을 두며 주로 기금개혁의 목표지역인 국경지역에 혜택을 부여한다.

이 계획은 낙후지역의 국경을 통과하는 공동 사회간접시설 등, 국경을 사이에 둔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낙후된 포르투갈-스페인 국경이 이 계획의 최대 수혜지역이다. 가장 긴 국경선을 가진 회원국인 프랑스의 변경지역의 대부분은 그 접경지역과 협력계획을 세웠으며 집행위원회가 확정한 INTEREG 지원금을 그 공조지역들과 분배하게 된다. 교묘하게도 집행위원회는 두 회원국 사이의 국경마다 단 한 항목씩의 예산만을 배정함으로써 서로 공동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한다.

-REGIS계획은 유럽변경지역(해외속령, 아소레스, 카나리, 마데로)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경제활동들의 다각화와 제3국 및 유럽공동체의 여타 지역과의 경제 관계의 탈종속화를 중점으로 한다.

-STRIDE계획은 후진지역이나, 쇠퇴하는 공업지역의 중소기업에서의 연구·개발의 도입을 촉진한다.

-新 STAR계획은 낙후지역에서의 통신산업을 위해, 1986년 채택된 동일한 이니셜명칭을 가졌던 계획을 연장하는 것이다.

-REGEN계획은 낙후지역에서의 에너지망 발전을 지원하여 그들의 에너지 보급을 다각화하는 것이다.

-PRISM계획은 낙후지역에서의 기업의 공동시장에 대한 대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단일시장에서 규정되는 공동의 규범정책의 실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규범연구소의 창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다.

-LEADER계획은 공동농업정책 개혁으로 영향을 받은 농촌지역을 위한 것이다.

-EUROFORM 계획은 새로운 성질의 발전과 고용능력을 촉진한다.

-NOW계획은 직업교육과 고용에서 여성의 기회균등을 위해 설립된 것며 HORIZON사업은 장애자들의 적응을 촉진하는 것이다.

유럽의회는 또한 집행위원회가 지역을 위해서 그밖의 다른 사업도 기획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의회의 요청에 따라 수립하게 된 RERIER계획은 특별한 어려움을 당한 변경 또는 취약지역에 혜택을 준다. 구통독 또는 동구국가로부터의 농산물수출로 타격을 받는 농업활동, 군사예산의 감소로 영향을 받는 군비산업의 재전환 등 유럽공동체의 원조를 정당화해 줄 사안들은 얼마든지 있다.

수혜대상이 되고 이 계획에 관련된 회원국들은 실행계획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이니셔티브 사업의 전 체계를 채택함에 있어서, 집행위원회는 낙후지역으로의 신용집중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회원국들이 평의회에서 그 의견을 청원하는 가운데 어떻든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랬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REGIS는 해외속령을 고려한 프랑

스 당국의 의견에 따른 것이며, RECHAR는 영국에 의해서 강력하게 제시되었던 것이다. 또한 유럽공동체 예산의 최대기여자인 서독도 마찬가지로 후한 혜택을 입었다.

마지막으로 집행위원회는 비수혜대상지역도 포함해서 선구적인 성격의 계획이나 시범적인 계획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배정되어 있는 세 기금의 미미한 여유분을 재량에 따라 사용한다.

11) 일시적 조치들: 구조기금 개혁의 당사자들은 지역을 위해 유럽공동체가 과거의 규정에 따라서 전에 약속한 지출계획이 존중되도록 했다. 개혁 후에 집중의 원칙의 적용으로 수혜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곳들은, 기존 계획으로 인정을 받아 그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받게 되어 있는 지원금의 혜택을 계속 받을 것이다. 여기에는 1992년 말까지의 지중해 통합계획, 구 발전기금 중의 유럽공동체 이의이 되는 국가별 계획, REGIDER, RENAVAL 등의 계획들이 해당된다.

VII.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유럽공동체에서의 지역문제의 양상과 유럽공동체 차원에서의 지역정책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결론적으로 현재의 유럽공동체 내의 지역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간단하게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유럽공동체의 구조기금의 수혜지역 가운데서 제1번, 5b번 목표에 해당하는 저발전 지역과 농촌 지역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성 향상의 기반인 사회 간접시설이 미비되어 있으면서 충분한 생산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기반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유럽공동체의 원조는 신용대출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지역이 그 자금을 사용한 후에 기일내에 그 채무를 갚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이런 지역에 대한 원조에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육성에 원조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각국 정부는 대규모 공공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를 원하고 있다. 집행위가 말하는 내생적 발전이란 아래로부터의 공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립은 공동체 원조의 수혜국 내부에서 중앙당국과 당사 지역들간의 이해대립을 힘축할 수도 있고, 중심국과 저개발국 간의 대립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요청된다.

(2) 유럽의 통합에는 사회경제적인 단계, 화폐·시장적인 단계, 그리고 정치적인 단계가 있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유럽공동체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이나 경제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 베네룩스 삼국, 덴마아크 등은 타블록과의 경쟁을 위해서 화폐적인 통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또 유럽 내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유경쟁제도를 유럽공동체내에서 확립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들은 유럽통합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인 동질성이라는 장기간을 요하는 과정을 완전히 해결할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정치적 통합을 서두르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이

질성과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통합은 저발전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자주성과 이익을 옹호해 주는 주권을 갖지 못한 채 중심국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단일한 유럽체제는 정치경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나 심정적으로는 분열되어 있는 평화롭지 못한 체제가 될 것이다.

(3) 이에 반해서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아스 등은 좀더 많은 원조를 받고, 특혜를 누리면서 국민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사회경제적 동질성이 보장되는 한에서 화폐적, 정치적 통합에 찬성하는 것이다. 사회경제적인 격차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남유럽의 저발전국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이며 지역적 격차도 결코 해결되기 힘들 것이다. 다만 동구체제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로 유럽 안보에 있어서 이탈리아, 그리아스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은 그만큼 약화되고, 반면에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점차 부상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접근통로로서 스페인, 포르투갈의 전략적 중요성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에게로 정치력이 집중되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4) 프랑스의 입장은 유럽공동체 안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부국들을 견제하고 그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적 동질성이 있는 남유럽의 라틴계 회원국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일치라는 연대적 차원의 목표를 강조하는 데서 알 수 있다. 농업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보호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프랑스는 민족국가적 협실주의와 연방주의라는 두 흐름 가운데 중간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그리고 유럽의회라는 세 기구 가운데서 유럽의회의 위상 강화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독일보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5) 이상의 흐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영국은 쇠퇴하는 공업지역(제 2번 목표)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유럽공동체에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협실적으로 산업정책 차원에서, 국가 당국과 지방자체 단체들이 협작하여 유럽공동체에서 보다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이끌어내는 데 노력하고 있다.

(6) 이런 시점에서 각국의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유럽공동체 내에서 각국의 협실적 입장을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민족국가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의 성립기의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식을 특징짓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후기 산업사회에 있어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 새로운 사회, 문화적인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초국가적이고 전지구적인 연대와 각지역에서의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해결이 모색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유럽공동체 내에서 지역의 위상과 지역정책의 문제는 점차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저발전 지역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민족적 이해의 회복화와 정치의 지역화 및 통합화가 그 산업발전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들의 이해 관계에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장문수

1991 『EC 금융통합과 우리의 대응방안』 1991.1.

국제결제은행

1990 『동구의 경제구조 개편과정』, B.R.I. Basel, Swiss.

김화진

1991 『유럽공동금융시장』, 제일경제연구소, 1991.4.

독일연방은행

1989 『독일통일의 비용』, Problèmes Economiques, documentation française, Pari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 『EC통합과 정책방향』.

럭키금성경제연구소

1989 『EC통합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 1989.8.

민충기

1990 『EC경제통합과 대외무역정책의 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EC의 직접투자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5.

박노형

1991 『새 유럽의 도전』, 매일경제신문사.

심상필

1990 “유럽의 금융통합 문제와 전망(상, 하)” 『상호신용금고』 1990. 7,8월호.

1989 “유럽 공동체(I - V)” 『정경세계』 1989. 봄, 가을, 겨울호

1991 “유럽의 농업공동정책(PAC)제도와 운영”, 『경제연구』, 흥의대학교.

전국은행연합회

1990 『EC통합과 국내은행의 대응방향』, 1990.7.

한국은행

1992 ‘지역경제불균형성 움직임의 진전현황과 전망,’ 『조사통계월보』, 1992. 2.

Aughey Arthur, Paul Hainsworth and Martin J. Trimble

1989 *Northern Ireland in the European Economy*, Policy Research Institute, The Queen's University of Belfast and the University of Ulster.

Bennett, Robert (ed.)

1989 *Territory and Administration in Europe* London and New York: Pinter Publishers
Commission DG des politiques régionales

1992 *Les politiques régionales dans l'opinion publique* par Ravet, Vincent, Bruxelles
Commission DG for Regional Policy

1991 *The ERDF in 1989*, Brussels
Commission DG for Employment

- 1992 *The Social Dimension* by Patrick Venturini
 Commission DG for Employment, Industrial Relations and Social Affairs
- 1992 *Employment in Europe 1991* Ch.4 European Integration and Regional Labour Market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1990 *European Economy- The impact of the internal market by industrial sector: the challenge for the Member States.*
- 1990 *Europe in figures, 1989/90 ed.*
Employment in Europe-1990.
- 1992 *European Economy- The economics of 1992.*
- Council Regulation(EEC) No 2052/88
 Council Regulation(EEC) No 4253/88
 Council Regulation(EEC) No 4254/88
 Council Regulation(EEC) No 4255/88
 Council Regulation(EEC) No 4256/88
- Dassù, Marta
 1990 "The Future of Europe: the View from Rome" *International Affairs* 66,2 pp. 299-311
- Donghy, Peter J.and Newton M.T.
 1987 *Spain,A Guide to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 Doutriaux, Yves
 1991 *La politique régionale de la CEE*, Press universitaire de France: Que sais-je?
 Drevet, J.-F.
- 1992 "Politique régionale et intégration européenne", *L'Évènement européen*, mars 1992, pp.65-77
- Geddes, Mike and John Benington
 1992 *Restructuring the Local Economy* Essex:Longman.
- Hannequart,Achille
 1992 *Economic and Social Cohesion in Europe*, London: Routledge. Appendix:
 Legislation Hutton,Steve
- 1989 "1992 and European Integration",*Local Government Studies*, Nov.-Dec.1989, pp. 1-11
- Jean-Victor Louis
 1989 *From EMS to monetary union*,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 Jenkins, Roy
 1990 *Europe beyond 1992*, Liverpool Univ. Press.
- Pascallon. Pierre

- 1990 La politique communautaire d'aménagement du territoire: du Traité de Rome à l'Acte unique *Revue du marché commun.* No.339, Août-Sep. 1990 pp.514-519
Yachir,F.
- 1989 *The Mediterranean between Autonomy and Dependency* Tokyo:United Nations University Ch.2 "The Future of Southern Europe:Canada or Puerto Rico?"

A study on the Regional Economic Disparity in the European Community

Sang Pil Shim · Doo Hyun Hwang

European Community(EC) has 12 member countries with different economic size and potential, which are now coping with the problem of economic disparity both within and between the countries.

In order to make a unified economic system, therefore, it has been necessary for EC to overcome the regional economic disparities.

This study tries to analyze EC's goal, means and the process of its effort to decrease those disparities. In this paper, firstly, we illuminate the discrepancies among the countries and regions in EC by using macro indicators. Then we define the regional policy and clarify the agents of the regional policy of EC.

We also analyze the means of the regional policy, especially highlighting the role of 'the structural fund', which is considered to be a very important means of the regional policy.

Finally, we trace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policy and enumerate the new project of the policy to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diverse historical backgrounds of European Countries, unifying Europe into one country is a great risk, even though the countries have some common backgrounds.

So in the trend of globalization of the world today, the process and the policy of unification attracts our attention. And, especially the outcome of the experiment of EC's regional policy could be a touchstone and a good reference for us.

심상필,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소 : (121-160)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Tel : 320-1250(O), 648-4885(H)

Fax : 320-1122

황두현,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소 : (121-160)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Tel : 320-1814(O), 546-3077(H)